

디자인 도면 작성 사례



사례) X사는 “볼펜”의 디자인 A를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디자인 A는 뚜껑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고, 뚜껑부분은 전부가 투명하다. X사로부터 상기 디자인 A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위임받은 변리사 甲이 디자인 A를 출원하기 위하여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도면의 역할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I. 문제의 제기

X사가 창작한 볼펜디자인 A는 뚜껑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고, 뚜껑부분은 전부가 투명한 것이므로 먼저, 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X사로부터 상기 디자인 A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할 도면의 역할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II. 볼펜디자인 A의 법적 의미

X사가 창작한 볼펜디자인 A는 뚜껑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고, 뚜껑부분은 전부가 투명한 것으로서, 먼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볼펜으로 특정될 수 있다. 볼펜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기재된 물품명으로 상기 디자인 A의 보호범위 해석에 전제가 된다. 또한, 볼펜디자인 A는 뚜껑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뚜껑과 본체가 결합한 상태뿐만 아니라, 뚜껑과 본체가 분리된 상태도 특정이 가능하다. 즉, 상기 볼펜디자인 A의 실시 태양에 있어서, 뚜껑과 본체가 결합된 상태 또는 분리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바, 출원 시 도면에 상기 두 가지 실시 태양을 고려하여 표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기 볼펜디자인 A는 뚜껑부분 전부가 투명한 물품으로서 투명색은 디자인보호법상 인정되는 색채의 일 종류이고, 뚜껑과 본체가 결합된 상태뿐만 아니라 분리된 상태에서의 외관이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의미를 갖는 볼펜디자인 A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도면의 역할 및 도면의 작성방법을 이하 검토한다.

III.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의 역할

1. 의의 및 취지

- 1) 도면은 출원디자인의 외관을 명확하게 도시하는 필수첨부서류를 말한다.(제9조제2항)
- 2) 디자인은 청구범위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기술적 사상인 발명과는 달리, 도면에 의해 적절하게 특정될 수 있는 바, 디자인보호법은 출원시 물품의 미적

외관을 특정한 도면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 3) 따라서, 도면은 ① 디자인보호법상 권리서, ②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기준, ③ 출원·심사, 심판 및 소송에서의 판단 대상, ④ 제3자의 디자인 창작 자료가 될 수 있다.

2. 구별 개념

도면에 같음하여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제9조제3항)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시 도면보다 그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면에 비해 권리범위가 더욱 협소해지고, 아이디어 착상 단계에서는 출원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3. 연혁 및 개정법의 태도

- 1) 2008년 1월 1일 시행법은 종래 도면 생략 사유를 매우 한정적으로 열거했던 것을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같은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같은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의 생략이 가능하고, 화상디자인에 대한 출원의 경우 정면도를 제외한 도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 2) 2009년 7월 1일 시행법은 종래 평면도와 저면도가 동일 또는 대칭인 경우 저면도만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평면도와 저면도 중 임의로 하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 3) 2010년 1월 1일 시행규칙은 종래 2차원 이미지 파일로 작성된 도면만을 제출하고, 도면의 형식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던 것을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3차원 모델링 형태로 작성된 도면(3D 도면)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면의 개수와 작성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도면의 종류 및 생략

(1) 필수 도면(기본 도면)

1) 입체 또는 평면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또는 종래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표면도 및 이면도로 제출하는 경우 동일한 축척으로 도시해야 한다. 이 경우 2D 또는 3D 도면('3D 도면'이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축과 각도를 달리하여 돌려 보기가 가능한 컴퓨터 3차원 영상 그래픽으로 표현된 도면을 말한다. 이 경우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 화면으로 하여 제출함)을 제출할 수 있다.

2) 글자체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2) 참고 도면(부가 도면)

필수 도면(기본 도면)만으로는 물품의 디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사용상태도 또는 전개도·단면도·절단부단면도·확대도 및 그 밖에 필요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3) 도면의 생략

(입체 또는 평면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종래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또는 표면도 및 이면도로 제출하는 경우)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의 경우 정면도와 배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배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일방의 측면도", 평면도와 저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는 "평면도" 또는 "저면도", 이외에 같은 도면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도면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 항상 설치 또는 고정되어 있어 저면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면도",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도면", 표면도와 이면도가 같거나 대칭인 경우 또는 이면도에 모양이 없는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면도"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5. 도면의 기재사항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명 기재 시에는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 중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에서 1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되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되고 보통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이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없고 그 명칭이 물품의 용도를 최소단위로 표현한 것이라면 “○○○용 부재” 등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2) 디자인의 설명

- 1) 도면·사진 또는 견본만으로는 그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
- 2)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동적 디자인)에 있어서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
- 3)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백색·회색 또는 흑색 중의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 5) 도면에서 길이가 생략된 경우에는 생략한 길이가 도면상의 몇 cm 생략되었음을 표시
- 6)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 7)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각 도면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창작내용의 요점

- 1)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판단 시 창작내용의 요점은 제외되기 때문에(제43조) 형식에 구애됨없이 디자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게 기재할 수 있다.
- 2) 디자인등록출원하는 자는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을 쉽고 간결하며 명확하게 기재한다. 가능한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이고 창작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국내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및 건조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가능한 이들 형태로부터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한다. 문자수는 가능한 300자 이내로 작성한다.

6. 특유디자인의 요건

(1) 부분디자인의 경우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그 이외 부분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그 경계를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한다.

(2) 글자체디자인의 경우

- 1) 글자체디자인의 도면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며,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제5항)
- 2)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출원하는 당해 글자체디자인의 종류 및 사용목적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 3) 창작내용의 요점란에는 공지된 글자체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며,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된 글자체 디자인의 분류를 기재할 수 있다.

(3) 완성품과 부품의 경우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고, 부품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 2) 다만, 부품의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제11조제2항 위반)라도 이는 무효사유는 아니다.(제68조제1항) 따라서, 부품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도면 등을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한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캐릭터디자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면 등을 통해 등록받으려는 캐릭터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특유디자인제도를 활용할 경우 각 특유디자인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작성해야 한다.

(5) 형상만의 디자인의 경우

형상만의 디자인에 대한 내부 여백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색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 이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6) 문자디자인의 경우

- 1) 종래에는 문자는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도시할 수 없었고, 물품의 사용상 불가결한 것, 물품의 일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상표나 상호 또는 문자, 기타 정보 전달만을 위한 문자, 표지로서 디자인의 미감에 영향이 없는 것은 그대로 도시하되, 이 경우 디자인의 설명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기재하여야 했다.
- 2) 그러나 현행법상 문자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해당 물품의 외관에 문자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고, 오로지 정보 전달만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디자인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7) 동적디자인의 경우

- 1)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디자인으로서의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것은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여 도시한다.
- 2) 디자인의 설명에는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물품의 형태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1부터 도면A 1.7까지,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1부터 도면B 1.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한다.

(8) 화상디자인의 경우

- 1) 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을 실선으로, 그 이외 부분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그 경계를 1점쇄선으로 명확히 도시하며,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화상디자인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 및 1점쇄선 등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다. 한편,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제출하여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의 편의상 정면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 2) 동적화상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화상디자인(동적화상디자인)에 대하여 그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한다. 또한, 디자인의 설명에는 그 변화의 전후에 걸친 화상디자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한다.
- 3) 표시부에 인쇄된 도형 등이 포함된 경우
물품에 표시된 도형 등이 화상디자인인지 인쇄된 도형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에는 '비통전시의 상태도' 나 '인쇄된 도형 등만을 표시한 참고도' 등에 의하여 당해 인쇄된 도형 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9) 색채디자인의 경우

- 1) 도면에 색채디자인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색채를 명확하게 도시해야 한다.
- 2)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백색·회색 또는 흑색(무채색) 중의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의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해야 한다.
-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투명색 포함)의 경우 겹에서 보이는 대로 도시하고, 그에 관한 설명은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해야 한다.

(10) 뚜껑과 본체가 분리되는 물품의 경우
조립된 상태의 도면 이외에 개개의 구성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도면 및 단면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11) 투명디자인의 경우
투명디자인은 겹에서 보이는 대로 도시한다. 또한 그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2) 복수디자인의 경우

- 1) 1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1항단서) 또한, 도면의 식별항목명에 해당디자인의 일련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2) 또한, 각각의 1디자인은 2D 도면이나 3D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1디자인을 2D 도면과 3D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해서는 안되며, 2D 도면 또는 3D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13)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 1) 도면은 각 구성물품의 도면만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1조의 도면을 제출하고,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또한, 각 구성물품의 1디자인은 2D 도면이나 3D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1디자인을 2D 도면과 3D 도면을 혼합하여 표현해서는 안되며 도면 또는 3D 도면 중 한가지로 통일되게 표현하여야 한다.

7. 도면과 관련된 흠결 시 효과

(1) 반려

- 1)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 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된다.(시행규칙 제2조)
- 2) 다만, 심사기준에 따르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와 첨부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보정의 경우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만,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를 첨부된 도면상의 디자인의 수에 따라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절차무효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가 누락된 경우 방식 위반으로 취급되어 특허청장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고(제17조), 보정 불응시 출원 절차가 무효된다.(제4조의15)

(3)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제5조제1항본문)

도면만으로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없거나, 디자인의 설명과 디자인의 일련번호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도면의 표현이 미비하여 구체성 결여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이다.

(4) 1디자인 1출원주의 위반(제11조제1항)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하거나 2 이상의 물품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병렬하여 기재한 경우 제11조2항 위반이다.

(5) 정당한 물품명의 기재(제11조제2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된 물품명이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이 아닌 경우에는 제 11조제2항 위반이다.

8. 극복 방안

(1) 보정(제17조 및 제18조)

1) 반려 및 절차무효의 경우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하거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적절한 물품명을 기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절차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창작내용의 요점란에 적절하게 기재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의 경우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즉 도면의 기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초 출원디자인과 보정된 디자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도면을 보정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3) 1디자인 1출원주의 위반의 경우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한 경우 하나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삭제 보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2 이상의 물품명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병렬하여 기재한 경우 하나의 물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명을 삭제 보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4) 정당한 물품명의 기재 위반의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기재된 물품명이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이 아닌 경우 도면에 기재된 물품을 고려하여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품명으로 보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2) 분할출원(제19조)

1디자인 1출원주의 위반의 경우로서, 1)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한 경우 하나의 물품을 제외한 나

머지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삭제 보정하고, 이를 각각 분할출원하여 극복할 수 있다. 2) 2 이상의 물품명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병렬하여 기재한 경우 하나의 물품명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명을 삭제 보정하고, 도면에 도시된 해당 물품을 각각 분할출원하여 극복할 수 있다.

IV. 사안의 해결

X사로부터 당해 출원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변리사는 권리서에 해당하는 도면을 반드시 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출원서 및 도면의 물품란에 불펜이라고 기재해야 하고, 불펜은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생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시도 및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를 모두 제출하거나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 형태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도면을 제출할 수 있다. 불펜디자인 A는 뚜껑과 본체로 구성되어 있어 뚜껑과 몸체가 조립된 상태의 도면 이외에 개개의 구성부분, 즉 뚜껑과 몸체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도면 및 단면 등을 표현하는 참고도면을 첨가하여야 하고, 뚜껑 부분의 전부가 투명하므로 겉에서 보이는 대로 도시하되, 이에 관한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디자인의 설명란에 당해 물품의 사용목적, 방법, 재질 또는 크기 등에 대해서도 기재할 수 있다. 만약 불펜디자인 A이 명확하게 특정된 도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면의 표현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향후 디자인보호법은 신 헤이그 협정 가입의 선 조치로서 도면 기재 요건을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한국발명진흥회**



김 웅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목 특허법인 근무